

의안번호	제120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6. 24. (제240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음물류폐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출자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제출연월일	2015. 6 .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안 제9조제7항 중 “판매가격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나. 안 제9조제8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서”를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로 하고 “자는”을 “자에게”로 한다.

다. 안 제11조(가산금)는 삭제한다.

라. 안 제1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마. 안 제16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 신고자가”를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 4. 검토의견

#####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서의견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중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별표 2로 정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수수료는 중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별표 2 제1호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별표 2 제2호에 따른 소형음식점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의 경우 해당 지역 수집·운반 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징수하고, 처리비는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⑥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제4항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제5항의 징수방법을 따른다.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가정용 및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제봉투의 <b>판매가격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	⑦ 가정용 및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제봉투의 <b>판매가격은 표 3과 같다.</b>	수정안 동의
⑧ (현행 4항과 같음) <b>다량배출사업장에서</b>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⑧ <b>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b>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수정안 동의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b>자</b> 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운반·처리하고자 하는 <b>자에게</b>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⑨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가산금)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삭 제>	수정안 동의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b>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b>	3. <b>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b>	수정안 동의
4. 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b>폐기물처리 신고자</b> 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b>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역금</b>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정안 동의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나. 구의회 수정안 별표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p><b>[별표 2] (현행 별표 3과 같음)</b></p> <p>1. 일반가정(단독 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p> <p style="text-align: center;"><b>무계형 종량제 수수료</b></p> <p>○ 단축·공동주택 수수료 : 100원/㎥ (주민보담율 80%)          (수집·운반비 : 50원/㎥, 처리비 : 70원/㎥)          ※ 수수료 = ㎥당 수집·운반·처리비용 × 일량량 × 주민보담율 (원표치)          ※ 주민보담율(%) = 수수료 수입 합계 ÷ 수집·운반·처리 소요비용합계 × 100          (신남부 수수료는 소요경비율 제외할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p> <p style="text-align: center;"><b>분피형 종량제 수수료</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용량</th> <th>수집·운반비</th> <th>처리비</th> <th>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2ℓ</td><td>50</td><td>110</td><td>160</td><td></td></tr> <tr><td>3ℓ</td><td>70</td><td>170</td><td>240</td><td></td></tr> <tr><td>5ℓ</td><td>120</td><td>280</td><td>400</td><td></td></tr> <tr><td>10ℓ</td><td>240</td><td>560</td><td>800</td><td></td></tr> <tr><td>20ℓ</td><td>480</td><td>1,120</td><td>1,600</td><td></td></tr> <tr><td>30ℓ</td><td>720</td><td>1,680</td><td>2,400</td><td></td></tr> <tr><td>50ℓ</td><td>1,200</td><td>2,800</td><td>4,000</td><td></td></tr> <tr><td>100ℓ</td><td>2,400</td><td>5,600</td><td>8,000</td><td></td></tr> </tbody> </table> <p>○ 부피환산계수 = 1ℓ에 0.8㎥ 적용          ※ 부피환산계수는 주기적으로 적량검을 행기 (지역 내 교본지역 해당)          ○ 수수료(가격) = [ℓ당 비용 × 분투용량(ℓ) × 주민보담율(원표치)]          ※ ℓ당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 분투처리비 : 지역 제정에 따른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 판매수수료 : 생활쓰레기분투 판매 수수료 준용하되,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p> <p>2. 소형음식점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1일 배출량 (별 기준)</th> <th rowspan="2">수집·운반비 (월간)</th> <th colspan="2">처리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th> <th>ℓ</th> </tr> </thead> <tbody> <tr><td>5㎥ 미만</td><td>5,800원</td><td rowspan="10">70원</td><td rowspan="10">80원</td><td rowspan="10">- 부피형 종량제 경우 단독·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식판은 분리하여야 하며, 봉투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 분투처리비용은 처리비 미포함</td></tr> <tr><td>10㎥ 미만</td><td>8,200원</td></tr> <tr><td>15㎥ 미만</td><td>12,500원</td></tr> <tr><td>20㎥ 미만</td><td>14,200원</td></tr> <tr><td>30㎥ 미만</td><td>17,500원</td></tr> <tr><td>40㎥ 미만</td><td>21,700원</td></tr> <tr><td>50㎥ 미만</td><td>25,000원</td></tr> <tr><td>60㎥ 미만</td><td>27,500원</td></tr> <tr><td>70㎥ 미만</td><td>28,200원</td></tr> <tr><td>80㎥ 미만</td><td>30,000원</td></tr> <tr><td>90㎥ 미만</td><td>31,700원</td></tr> <tr><td>100㎥ 미만</td><td>33,400원</td></tr> </tbody> </table> <p>※ 100㎥ 이상은 수거 난이도에 따라 용량의 계약으로 결정함.</p>	용량	수집·운반비	처리비	계	비고	2ℓ	50	110	160		3ℓ	70	170	240		5ℓ	120	280	400		10ℓ	240	560	800		20ℓ	480	1,120	1,600		30ℓ	720	1,680	2,400		50ℓ	1,200	2,800	4,000		100ℓ	2,400	5,600	8,000		1일 배출량 (별 기준)	수집·운반비 (월간)	처리비		비고	㎥	ℓ	5㎥ 미만	5,800원	70원	80원	- 부피형 종량제 경우 단독·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식판은 분리하여야 하며, 봉투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 분투처리비용은 처리비 미포함	10㎥ 미만	8,200원	15㎥ 미만	12,500원	20㎥ 미만	14,200원	30㎥ 미만	17,500원	40㎥ 미만	21,700원	50㎥ 미만	25,000원	60㎥ 미만	27,500원	70㎥ 미만	28,200원	80㎥ 미만	30,000원	90㎥ 미만	31,700원	100㎥ 미만	33,400원	<p><b>[별표 2] (개정안과 같음)</b></p>	
용량	수집·운반비	처리비	계	비고																																																																													
2ℓ	50	110	160																																																																														
3ℓ	70	170	240																																																																														
5ℓ	120	280	400																																																																														
10ℓ	240	560	800																																																																														
20ℓ	480	1,120	1,600																																																																														
30ℓ	720	1,680	2,400																																																																														
50ℓ	1,200	2,800	4,000																																																																														
100ℓ	2,400	5,600	8,000																																																																														
1일 배출량 (별 기준)	수집·운반비 (월간)	처리비		비고																																																																													
		㎥	ℓ																																																																														
5㎥ 미만	5,800원	70원	80원	- 부피형 종량제 경우 단독·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식판은 분리하여야 하며, 봉투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 분투처리비용은 처리비 미포함																																																																													
10㎥ 미만	8,200원																																																																																
15㎥ 미만	12,500원																																																																																
20㎥ 미만	14,200원																																																																																
30㎥ 미만	17,500원																																																																																
40㎥ 미만	21,700원																																																																																
50㎥ 미만	25,000원																																																																																
60㎥ 미만	27,500원																																																																																
70㎥ 미만	28,200원																																																																																
80㎥ 미만	30,000원																																																																																
90㎥ 미만	31,700원																																																																																
100㎥ 미만	33,400원																																																																																

<신 설>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9조7항 관련)

(단위: 원)

용량 (ℓ)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이윤)	
	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영업용
1	80		4	
2	160		9	
3	240		13	
5	400	300	22	16
10	800	600	45	33
20	1,600	1,200	90	67
30	2,400	1,800	135	101
50		3,000		169
100		6,000		33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다.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강남구의회 수정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므로 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

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커피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형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및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이나 그 밖의 식품류를 취급하는 영업행위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법 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깔끔하게”를 “깔끔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배출 수수료”를 “수수료”로, “무게당”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으로, “별표 3으로”를 “별표 2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표 2 제1호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⑤ 별표 2 제2호에 따른 소형음식점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의 경우 해당 지역 수집·운반 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징수하고, 처리비는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⑥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제4항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제5항의 징수방법을 따른다.

⑦ 가정용 및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 제목“(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세입처리 등)”을“(수수료 세입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제9조제2항 단서”를 “제9조제5항”으로, “수집·운반사업자”를 “해당 지역 수집·운반 위탁사업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을“(수수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은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로,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위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폐기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만,”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을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1.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호 중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을 “처리 실적 등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1월”을 “2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사유”를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1. 일반가정(단독·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

#### 무계형 종량제 수수료

- 단독·공동주택 수수료: 100원/kg (주민부담율: 60%)  
(수집·운반비 : 30원/kg, 처리비: 70원/kg)
- ※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 발생량 × 주민부담율 (목표치)
- ※ 주민부담율(%) = 수수료 수입 합계 ÷ 수집·운반·처리 소요비용합계 × 100  
(선담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

(단위:원)

용량	수집·운반비	처리비	계	비고
2ℓ	50	110	160	
3ℓ	70	170	240	
5ℓ	120	280	400	
10ℓ	240	560	800	
20ℓ	480	1,120	1,600	
30ℓ	720	1,680	2,400	
50ℓ	1,200	2,800	4,000	
100ℓ	2,400	5,600	8,000	

- 부피환산계수 = 1ℓ에 0.8kg 적용
- ※ 부피환산계수는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 (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수수료(가격) = [ℓ 당 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 ※ ℓ 당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 ※ 봉투제작비 : 자체 제작에 따른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 ※ 판매수수료 : 생활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준용하되,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2. 소형음식점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

1일 배출량 (월 기준)	수집·운반비 (월간)	처리비		비고
		kg	ℓ	
5kg 미만	5,800원	70원	60원	- 부피용 종량제 경우 단독·공동 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색깔을 달리하여야 하며, 봉투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 봉투제작비용은 처리비 미포함
10kg 미만	9,200원			
15kg 미만	12,500원			
20kg 미만	14,200원			
30kg 미만	17,500원			
40kg 미만	21,700원			
50kg 미만	25,000원			
60kg 미만	27,500원			
70kg 미만	29,200원			
80kg 미만	30,000원			
90kg 미만	31,700원			
100kg 미만	33,400원			
※ 100kg 이상은 수거 난이도에 따라 쌍방의 계약으로 결정함.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9조제7항 관련)

(단위:원)

용량 (ℓ)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이윤)	
	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영업용
1	80		4	
2	160		9	
3	240		13	
5	400	300	22	16
10	800	600	45	33
20	1,600	1,200	90	67
30	2,400	1,800	135	101
50		3,000		169
100		6,000		33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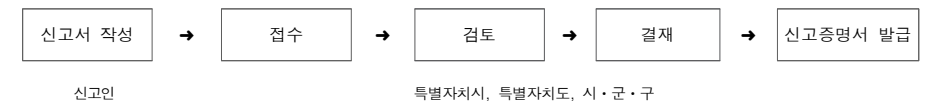
### 작성방법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일	kg/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⑩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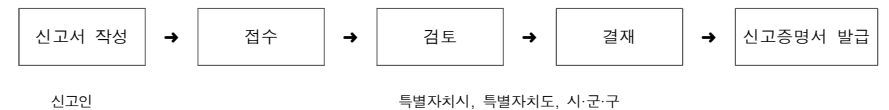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21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⑥ 및 ⑩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번호 제 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인

공동 수집·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 수집· 운반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 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 리량	운반자	재활용 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 27 -																					

364mm×257 mm[백상지80g/㎡(재활용품)]

( 뒤 쪽 )

####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제12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제12조(수수료 지원) -----  
-----  
-----  
-----  
수수료-----  
-----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

② 음식물류-----  
-----  
-----위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 폐기물 종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 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 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1.·2. (생략)

3. 소형음식점 등 영업상 행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제봉투-----  
-----  
-----  
-----  
-----  
-----  
-----

② ----- 종량제봉투-----  
-----  
-----  
-----  
-----  
-----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2. (현행과 같음)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제9조제6항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8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  
-----  
-----  
-----  
-----.  
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

<신 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1.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  
-----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 2월 -----  
-----.

5. -----  
-----  
-----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  
----- <후단 삭제>

<p>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체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p>	
<p>&lt;신 설&gt;</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p>
<p>&lt;신 설&gt;</p>	<p>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p>
<p>&lt;신 설&gt;</p>	<p>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p>
<p>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p>	<p>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p>

<p>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1.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p>	<p>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p>
<p>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① 법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p>
<p>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p>	<p>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p>



## 신 · 구별표대비표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	------------------------------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2]</b></p> <p><b>[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22조 관련)</b></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p> <p>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p> <p>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각용법</th> <th rowspan="2" style="width: 60%;">부과항목</th> <th colspan="3" style="width: 30%;">부과금액(만원)</th> </tr> <tr> <th style="font-size: small;">1차 위반</th> <th style="font-size: small;">2차 위반</th> <th style="font-size: small;">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font-size: small; vertical-align: top;">폐기물관리법</td> <td style="font-size: small;">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td> <td style="font-size: small;">가. 단독주택·임대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10</td> <td style="font-size: small;">20</td> <td style="font-size: small;">3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20</td> <td style="font-size: small;">30</td> <td style="font-size: small;">5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td> <td style="font-size: small;">50</td> <td style="font-size: small;">70</td> <td style="font-size: small;">10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30</td> <td style="font-size: small;">50</td> <td style="font-size: small;">10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30</td> <td style="font-size: small;">50</td> <td style="font-size: small;">10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다. 감량위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30</td> <td style="font-size: small;">40</td> <td style="font-size: small;">6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60</td> <td style="font-size: small;">80</td> <td style="font-size: small;">10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라. 감량위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의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td> <td style="font-size: small;">20</td> <td style="font-size: small;">30</td> <td style="font-size: small;">5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단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td> <td style="font-size: small;">100</td> <td style="font-size: small;">300</td> <td style="font-size: small;">500</td> </tr> </tbody> </table>	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임대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위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위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의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단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p>&lt;삭 제&gt;</p>
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임대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위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위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의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단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3]**

**무개형 종량제 수수료 (제9조제2항 관련)**

- 단독·공동주택 수수료: 100원/kg (주민 부담율: 60%)  
(수집·운반비: 30원/kg, 처리비: 70원/kg)
- ※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 발생량 × 주민부담율(목표치)
- ※ 주민부담율(%) = 수수료 수입 합계 ÷ 수집·운반·처리 소요비용합계 × 100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 (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용량	수집·운반비	처리비	계	비고
2ℓ	50	110	160	
3ℓ	70	170	240	
5ℓ	120	280	400	
10ℓ	240	560	800	
20ℓ	480	1,120	1,600	
30ℓ	720	1,680	2,400	
50ℓ	1,200	2,800	4,000	
100ℓ	2,400	5,600	8,000	

- 부피환산계수 = 1ℓ에 0.8kg 적용
- ※ 부피환산계수는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수수료(가격) = [ℓ당 비용 × 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 ※ ℓ당 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 ※ 봉투제작비: 지역 제각에 따른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 ※ 판매수수료: 생활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준용하되,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소형음식점 등 수수료(수집·운반·처리) 산정표 (제9조제4항 관련)**

1일 배출량 (월 기준)	수집·운반비 (월간)	처리비		비고
		kg	ℓ	
5kg 미만	5,800원	70원	80원	- 부피형 종량제 경우 단독·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석판을 달리하여야 하며, 봉투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 봉투제작비용은 처리비 포함
10kg 미만	9,200원			
15kg 미만	12,500원			
20kg 미만	14,200원			
30kg 미만	17,500원			
40kg 미만	21,700원			
50kg 미만	25,000원			
60kg 미만	27,500원			
70kg 미만	29,200원			
80kg 미만	30,000원			
90kg 미만	31,700원			
100kg 미만	33,400원			

※ 100kg 이상은 추가 난이도에 따라 함방의 계약으로 결정함.

**[별표 2]**

**1. 일반가정(단독·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

**무개형 종량제 수수료**

- 단독·공동주택 수수료: 100원/kg (주민 부담율: 60%)  
(수집·운반비: 30원/kg, 처리비: 70원/kg)
- ※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 발생량 × 주민부담율(목표치)
- ※ 주민부담율(%) = 수수료 수입 합계 ÷ 수집·운반·처리 소요비용합계 × 100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

(단위: 원)

용량	수집·운반비	처리비	계	비고
2ℓ	50	110	160	
3ℓ	70	170	240	
5ℓ	120	280	400	
10ℓ	240	560	800	
20ℓ	480	1,120	1,600	
30ℓ	720	1,680	2,400	
50ℓ	1,200	2,800	4,000	
100ℓ	2,400	5,600	8,000	

- 부피환산계수 = 1ℓ에 0.8kg 적용
- ※ 부피환산계수는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수수료(가격) = [ℓ당 비용 × 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 ※ ℓ당 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 ※ 봉투제작비: 지역 제각에 따른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 ※ 판매수수료: 생활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준용하되, 수수료 가격에 미포함

**2. 소형음식점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

1일 배출량 (월 기준)	수집·운반비 (월간)	처리비		비고
		kg	ℓ	
5kg 미만	5,800원	70원	80원	- 부피형 종량제 경우 단독·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석판을 달리하여야 하며, 봉투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 봉투제작비용은 처리비 미포함
10kg 미만	9,200원			
15kg 미만	12,500원			
20kg 미만	14,200원			
30kg 미만	17,500원			
40kg 미만	21,700원			
50kg 미만	25,000원			
60kg 미만	27,500원			
70kg 미만	29,200원			
80kg 미만	30,000원			
90kg 미만	31,700원			
100kg 미만	33,400원			

※ 100kg 이상은 추가 난이도에 따라 함방의 계약으로 결정함.

**<신 설>**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9조7항 관련)**

(단위: 원)

용량 (ℓ)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이윤)	
	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영업용
1	80		4	
2	160		9	
3	240		13	
5	400	300	22	16
10	800	600	45	33
20	1,600	1,200	90	67
30	2,400	1,800	135	101
50		3,000		169
100		6,000		33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 작성요령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차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연소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kg)

신고번호: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월평균 출생인원  명

[ ] 음식점: 겸: 객석·객실·외출·외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기처리계획	자기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간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처리량 (kg/일)	처리량 (kg/일)

⑧ 자기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재활용량 (kg/일)	위탁재활용량 (일/년)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내용 (일/년)	위탁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kg)

<반경사찰>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신 설>

[별지 제2호의2 서식]

■ 별지 제2호의2 서식 (단위: kg)

신고번호: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월평균 출생인원  명

[ ] 음식점: 겸: 객석·객실·외출·외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기처리계획	자기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간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처리량 (kg/일)	처리량 (kg/일)

⑧ 자기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재활용량 (kg/일)	위탁재활용량 (일/년)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내용 (일/년)	위탁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인

■ 별지 제2호의2 서식 (단위: kg)

공통 수집·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양·역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비율량		대표자	소재지
	kg/일	kg/년		

연 월 일

내 용

확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5985